

# '93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

의안 번호	1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'93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 승인을 구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공유재산의 취득, 교환, 매각

가. 재산의 취득

[ 일반회계 ]

- 단양마늘시험장 연구실 및 창고등 신축
  - 연구실 신축 :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53 , 544 m<sup>2</sup>
  - 창고 신축 :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53 , 500 m<sup>2</sup>
  - 관리사 신축 : 단양군 어상천면 대전리 653 , 196 m<sup>2</sup>

○ 농촌진흥원의 온실 및 버섯재배사 신증축

- 온실 신축 : 청주시 복대동 248 - 10 , 660 m<sup>2</sup>
- 온실 증축 : 청주시 복대동 257 - 3 , 165 m<sup>2</sup>
- 버섯재배사 증축 : 청주시 복대동 254 - 6 , 100 m<sup>2</sup>

○ 도유림사업소의 자연휴양림 조성지구내 편의시설 신축

-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 - 4 외 1필지 , 340.16 m<sup>2</sup>

○ 대체재산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

- 대상지 조사후 확정 , 3,413 m<sup>2</sup>

[ 공유림관리특별회계 ]

○ 도유림사업소의 도유림확대계획에 따른 임야 매입

- 대상지 조사후 확정 , 200,000 m<sup>2</sup>

나. 재산의 교환

[ 일반회계 ]

- 교환취득 : 청주시 율량동 660 - 348 외 1 필지 , 1,984 m<sup>2</sup>

- 교환처분 : 청주시 사천동 25 - 14 , 1,983 m<sup>2</sup>

다. 재산의 매각

[ 일반회계 ]
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
  - 농경지를 대부분은 실경작자가 경작하는 토지
    - . 청원군 강내면 사인리 214 - 41 외 6 필지 , 3,385 m<sup>2</sup>
  -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토지
    - . 청주시 우암동 312 - 9 , 28 m<sup>2</sup>

[ 공유림관리특별회계 ]

- 도유림사업소의 영림계획에 의한 입목 매각
  - 괴산군감물면 매전리 산 1 - 1 외 5 필지 , 6,785 m<sup>2</sup>

3. 제안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
-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39조
-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

4. '93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 : 별 첨

5. 관계법령발췌 : 별 첨